

6. 대물반환·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

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(대물반환)

피고는 원고에게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산 1-2 임야 00㎡(임야대장상 표시는 같은 동 1-2 임야 00㎡와 같은 동 1-3 임야 00㎡임)와 같은 동 산 1-4 임야 00㎡에 관하여, 이 사건소장 송달일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(대물변제)

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산 101-1 임야 13,229㎡ 및 같은 리 산 101-3 임야 6,614㎡ 중 각 공유자 김○○ 지분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2. 7. 10.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[참조판례] ① 최초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접 청구와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요건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,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,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.

②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(대법원 1991.4.23. 선고 91다5761 판결)

㉢ 소유권이전등기 청구(대물변제계약)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1975. 6. 1.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㉣ 소유권이전등기 청구(대물변제예약 완결)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. 10. 10.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